

#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글 \_ 박종복 변호사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으나, 바빠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더니 패소판결문이 날아왔다. 본인이 즉시 항소하였으나 갑은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항소제기 중인데도 경매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는 경우 귀하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따라서 갑이 귀하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제213조)에 의하면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설사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가집행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자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얻어야 그 집행의 효력이 비로소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귀하는 제1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가집행으로 인하여 부당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명령을 하더라도 상당한 담보(예를 들어 상당한 금액의 현금공탁)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패소한 귀하로서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